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357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0월 20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재익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상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(행정처분, 지도 · 감독 등) 확대(안 제5조제12호)

나.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 위임 사항 정비 및 신설(안 제5조34호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7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상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12호는 평생교육시설 관련 사무에 대한 교육장의 위임 권한을 확대하고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3항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 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7조제3항¹⁾은 교육감에게 각 호(제1호~제

1)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
제7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② 생략

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
2.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(「초·

12호)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

안 제5조제12호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중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(시행령 제1호)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(제3호)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목에 규정함으로써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교육자치법’)」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다음으로 안 제5조제34호는 현재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‘일반고 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’에 관한 규정을 ‘공·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사무 중 각목에 규정된 사항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은 「교육자치법」 제26조²⁾에 따라 서울특별시

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)

3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
 4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
 5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
 6.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
 7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
 8.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
 9.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·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10.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
 11.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
 12. 제49조제4항(제65조제2항,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
④ 생략
- 2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- 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② ~ ④ 생략

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³⁾ 등에 위임할 수 있고,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동 조례 제5조⁴⁾에서 사무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.

- 현재 「교육자치법」 제35조⁵⁾는 교육장에게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반면 공·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호에 따라 조례를 통해 교육장에게 사무를 위임 및 분장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재 교육지원청은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만이 아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법규 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.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및 각 부서의 의견을 수합·검토하고⁶⁾, 타시도교육청의 사무내용 등을 비교하여 장학, 진로교육(일반고), 학업 중단 예방 사업, 교육복지 관련 사업, 정보화 관련 사업,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 지원 사업 등의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

3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은 교육지원청을 의미하며, 동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.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5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6)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(2025.8.).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정비를 위한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.

임할 수 있는 사무로 분류하였습니다.

- 따라서 안 제5조34호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불일치하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34호 개정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문을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으나, 안 제5조의 개정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분장에 큰 변화가 발생 되는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전에 본청 및 교육 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논의와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아울러 동 조례안과 같이 교육감의 권한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의 경우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사무를 구분하도록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, 권한 위임의 범위와 사무 구분이 보다 공감을 얻고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 절차나 검토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 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 . 토론요지 : 없음.

VI 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 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 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5조제12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 · 신고 및 변경 보고 · 등록 · 신고, 폐쇄, 행정처분, 지도 · 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

가.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

나.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

다.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

라.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

마.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

바. 지식 ·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

34. 공 · 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

나.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다.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

- 라.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- 마. 정보화에 관한 사항
- 바.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 1. ~ 11. (생 략) <u>12.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, 폐지 및 지도 · 감독</u>	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 ----- 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·신고 및 변경 보고·등록·신고, 폐쇄, 행정처분, 지도·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</u> <u>가.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</u> <u>나.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</u> <u>다.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</u> <u>라.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</u> <u>마.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</u> <u>바.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</u>
13. ~ 33. (생 략) <u>34. 일반고등학교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</u>	13. ~ 33. (현행과 같음) <u>34. 공·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</u> <u>가.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</u> <u>나.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다.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</u> <u>라.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</u>

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
마. 정보화에 관한 사항

바.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

운영에 관한 사항

35. · 36. (생 략)

35. · 36. (현행과 같음)